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현재 유효사항) - 집합건물 -

고유번호 1144-2006-004852

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303-8외 1필지 성북 어승재 에이단지 제지1층 제1-1호

【 표 제 부 】 (1동의 건물의 표시)					
표시번호	접 수	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	
2		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303-8, 303-9 성북 어승재 에이단지 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26길 60	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3층 연립주택(4세대) 1층 274.65㎡ 2층 274.65㎡ 3층 274.65㎡ 지하1층 274.65㎡ 지하2층 931.50㎡	도로명주소 2019년12월13일 등기	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					
표시번호	소 재 지 번		지 목	면 적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1.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303-8 2.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303-9		대 대	566㎡ 571㎡	2006년2월24일

【 표 제 부 】 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접 수	건 물 번 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2006년2월24일	제지1층 제1-1호	철근콘크리트구조 244.99㎡	도면편철장 제1책 제57호
(대지권의 표시)				
표시번호	대지권종류		대지권비율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1, 2 소유권대지권		1137분의 284.25	2006년2월24일 대지권 2006년2월24일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303-8외 1필지 성북 어승재 에이단지 제1층 제1-1호

【 갑 구 】 (소유권에 관한 사항)				
순위번호	등 기 목 적	접 수	등 기 원 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6	소유권일부이전	2015년3월19일 제25187호	2015년3월12일 증여	공유자 지분 16분의 6 김수자 400624-*****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84, 304호(홍은동, 유진아파트)
7	5번김동섭지분전부 이전	2015년11월3일 제124253호	2015년11월3일 매매	공유자 지분 16분의 10 김철환 781115-*****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84,304호(홍은동, 유진아파트) 거래가액 금1,000,000,000원

【 을 구 】 (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)				
순위번호	등 기 목 적	접 수	등 기 원 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	근저당권설정	2015년11월3일 제124254호	2015년10월19일 설정계약	채권최고액 금550,000,000원 채무자 김철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84,304호(홍은동, 유진아파트)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우리은행 110111-0023393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(회현동1가) (홍제동지점)

-- 이 하 여 백 --

관할등기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

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
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
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

* 기록사항 없는 갑구, 을구는 ‘기록사항 없음’ 으로 표시함.

주요 등기사항 요약 (참고용)

[주 의 사 항]

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유번호 1144-2006-004852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303-8외 1필지 성북 어승재 에이단지 제1층 제1-1호

1. 소유지분현황 (갑 구)

등기명의인	(주민)등록번호	최종지분	주 소	순위번호
김수자 (공유자)	400624-*****	8분의 3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84, 304호(홍은동, 유진아파트)	6
김철환 (공유자)	781115-*****	8분의 5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84, 304호(홍은동, 유진아파트)	7

2.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(갑 구)

- 기록사항 없음

3. (근)저당권 및 전세권 등 (을 구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정보	주요등기사항	대상소유자
1	근저당권설정	2015년11월3일 제124254호	채권최고액 금550,000,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우리은행	김수자 등

[참 고 사 항]

- 가.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.
나.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,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.
다.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.
라.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'확인불가'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